

Client Alert

April 2016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Yvonne Beh
+603 2298 7808
yvonne.beh@wongpartners.com

Tan Yi Lyn
+603 2298 7847
yilyn.tan@wongpartners.com

기소에 부장, 한국 기업 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말레이시아의 GST:도입 이후 1년

2009년 GST 도입에 대한 최초의 발표가 있던 이래, 여러 차례의 지연과 연기를 거친
물품 및 서비스세 ("GST")제도는 2015년 4월 1일 말레이시아에 도입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GST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난 12개월 간 기업들이 겪은
중요 시사점과 핵심 이슈들을 잠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의해야 할
잠재적인 GST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수치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재정부에서 발표한 몇몇 통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3월 기준, 406,000개의 회사가 GST에 등록함;
- 2015년 GST 징수액은 목표치RM27 billion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 (환급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는 확정되지 않음);
- RM 800 million 의 GST환급이 진행중이거나 보류중. 관세청은 2016년에는 RM 39
billion 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함;
- 2016년 1월 31일 기준, 관세청은 1,190건의 GST 관련 사건을 조사함.

지난 일년: 핵심 이슈 / 우려점

새로운 세금 제도 혹은 세금 모델이 도입되면, 실행 단계에서는 언제나 초기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GST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GST가 도입된 지난 12개월 간 기업들이 제기한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크레딧 환급

매입세액 크레딧 환급은 기업의 자금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환급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지 여부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물품 및 서비스세 규정 2014에 의하면, 온라인 제출의 경우 매입세액 크레딧 환급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혹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된 매입세액 크레딧 환급은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GST가 도입되고 처음 몇 달 동안, 환급 프로세스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몇몇 경우는 환급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관세청은
GST 환급 양식 작성 오류 및 은행 계좌 정보의 오류, 또한, 사기성 환급 청구
건들을 걸러내기 위한 확인 작업,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말 관세청은 대략 70%의 GST 환급 청구 건들이 근무일 기준 14일 내에
처리되고 환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이 매입세액 환급 건 관련하여 추가 정보 (세금 인보이스, 세관 통관 서류
등 포함)를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추가 정보 요청 및 확인
작업으로 GST 환급 과정이 길어지곤 합니다. 2번 이상 연속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전 확인 / 검토 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 (“PCAP”)의 준수

PCAP는 GST 제도가 말레이시아에 도입됨에 따라,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을 염려하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PCAP에 의하면, 물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때, 비합리적으로 높은 이윤을 내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PCAP에 의거 수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DTCC”)가 사업장을 수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으며, 대중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권한도 갖습니다. 2016년 3월 8일 기준으로, PCAP의 21조에 의거하여 2,848건의 통지서를 발행했고, 209건의 추가 조사 서류가 열렸습니다. 현재 16건이 기소되어 유죄선고가 내려졌고, 13건이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을 고조시키기 위해 MDTCC가 철저히 검토하는 바, 가격 책정 고려 시 PCAP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GST 자발적 등록

현 물품 및 서비스세 법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4, “GST Act”)은 GST 등록과 관련 두 가지 메카니즘을 제공합니다:

- (a) GST 의무 등록 - 과세 공급이 RM500,000이상인 기업은 의무 등록 (실적 자료 기준 혹은 미래 예측치 기준), 혹은
- (b) GST 자발적 등록 - 과세 공급이 RM500,00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등록.

자발적 등록 메카니즘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면 GST 등록을 허가할 것입니다: (i)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ii)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세 공급을 하는 혹은 할 것으로 판단됨.

관세청은 자발적 등록을 충족하는 조건들 중 하나로 GST 자발적 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RM500,000 이상의 과세 공급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추가 요건을 (Additional Requirement)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추가 요건은 2015년 10월에 수정되었는데, GST 자발적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과세 공급을 해야 한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즉,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RM500,000이상의 과세 공급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수정됨)

실제로, 사업의 시작 전 준비 단계 혹은 시작 단계는 1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과세자는 이 기간에 상당한 GST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사업, 석유가스 탐사업, 혹은 제조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12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요건 (즉, 12개월 내에 첫번째 과세 공급을 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자는 GST에 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며, 즉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서비스에 대한 GST의 매입세액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GST는 사업 운영 비용이 되어 기업의 운영 자금 운용, 이윤, 향후 공급가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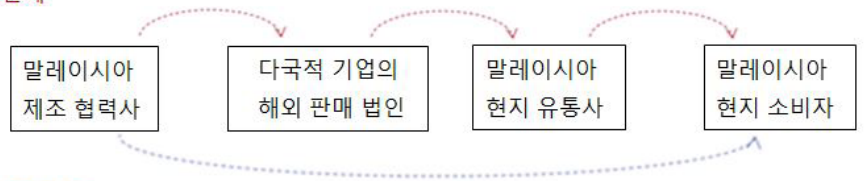
그러므로, 관세청이 추가 요건을 개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준비 기간에 GST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을 어떻게 할 지를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물류망 재구조화

GST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공급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물품이 말레이시아의 어떤 장소에서 옮겨지거나 혹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은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물품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물품의 소유권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전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교역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공급 장소 규칙으로 잠재적인 GST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



실제 물품 이동

다국적 기업이 위의 도식과 같은 물류망을 갖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의 제조 협력사가 제조한 완제품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법인으로 판매된 후 즉각적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유통사에 판매되며 (즉, 완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됨), 이후 현지 소비자로 판매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다국적 기업의 판매 법인은 말레이시아의 현지 유통사로서의 과세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해당 물품이 말레이시아에 있음). 만약 공급액이 RM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의 판매 법인은 GST에 등록하고 완제품의 판매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GST에 등록한 이후에 이어지는 GST 납부, 인보이스 발급, 기록 보유 등을 비롯한 현지 법률 준수 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외국 기업으로 GST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말레이시아 GST 요건을 준수함을 물론 GST가 야기할 영향을 고려하여 물류망 모델을 재검토하여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ST 관련 향후 고려점

1. 세무 조사의 증대

관세청과 기업들 모두 GST제도에 정착한 바, 관세청의 세무 조사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의 GST 징수 목표액은 RM39billion으로 정해졌고, 관세청은 감사팀을 현장으로 곧 내보낼 것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 1월 말레이시아 수상의 국가 예산안 재보정 발표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 중 하나가 세금 준수 및 세무 조사 강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GST 도입 이후 2년 간 수행된 세무 조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기업이 준수 해야할 요건을 이해하도록 "자문"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미준수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구두상의 특별 인가는 법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관세청은 세무 조사에서 발견되는 미준수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GST의 자동 과세 및 새로운 처벌

2015년 10월에 관세청은 GST에 등록했으나 GST 신고를 하지 않는 과세자들에게 자동 과세액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동 과세액은 등록 시 신고한 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또한, GST 법은 2016국가 예산안 발표에 따라 새로운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되기 전에는, GST 법에 의거 GST 미납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RM50,000의 벌금 혹은 3년 미만의 징역형, 혹은 둘 다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했었습니다.

수정된 GST법은 GST 미납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도입했습니다:

- (i) 1-30일 경과 후 미납액 납부: 미납된 GST 액의 5%의 과태료 추가 납부;
- (ii) 31-60일 경과 후 미납액 납부: 미납된 GST 액의 10%의 과태료 추가 납부;
- (iii) 61-90일 경과 후 미납액 납부: 미납된 GST 액의 10%의 과태료 추가 납부(최대 25%의 과태료 부과 가능).

GST 감사가 시작되면, 관세청은 자동 과세되는 기업들이 주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3. GST 인상?

현 경제 상황과 원유가 하락을 볼 때, GST 세율이 잠재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가 예산안 발표에서 수상은 현GST 세율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재정부는 정부는 GST 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향상되지 않으면 달라질 수도 있으나, 단 기간에 GST 세율에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의 GST 세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의GST는 10%이며, 태국, 싱가포르는 7%의 GST를 부과합니다.

4. GST 제도의 조정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도입된 바, 말레이시아의 GST 제도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 및 기업의 사업에 따라, GST 법과 하위 법규의 해석, GST 준수 의무에 대한 실질적 이행, 준수 요건, 거래 및 공급의 GST 처리 등 관세청의 확인이 필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들은 관련된 GST 조항들 및 GST 처리에 대한 확인 및 변경을 위해 관세청에 로비를 해 온 것으로 압니다. GST 로의 이행은 끝났으며 향후 중요한 이슈들은 GST 법의 해석 및 GST 준수에 따른 것이므로, 관세청에의 로비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군들 및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기하는 것은 관련 산업이 당면하는 GST 관련 애로 사항들을 관세청이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산업군들의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GST 제도와 규칙들의 작은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준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기소예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Suite 21.0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